

【 2016.1.7(목) 강원일보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7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6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 2016.1.7(목) 강원도민일보 】

전 속초시 고위공무원 자택 압수수색

강원경찰청, 금품수수 의혹 조사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속초시청 전 고위 공무원 A씨의 집과 고성 및 속초지역 공사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A씨가 관내 건설업체 등과 유착해 편의를 봐 주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경찰의 압수수

색이 어느 정도 소문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에 대한 첩보가 입수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아직은 첩보 단계인 만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

— ● 동 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7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6 건설인 신

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甲질?

건설공사 '선급금 몰아주기' 생색 이자 붙여 반환 요구하는 발주처

〈미집행 잔액〉

건설공사 선급금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사들을 옥죄고 지역경제를 잠먹을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통행식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용지보상 또는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기성계획에 못 미칠 경우, 이자까지 붙여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 때문에 원가분담금 갈등과 하도급사 고의부도 등 현장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에서 대규모 철도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반환하라는 한 통의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은 연초에 받아갔던 선급금에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 선급금과 기성금을 구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대표사는 다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반환금을 요구했다.

**시공사가 원치 않는
선급금이 받을수록
보증 수수료만 붙어
분담금 갈등도 초래**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사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포함, 각각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내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기간 및 금액별로 연 3%안팎의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 각사별 이자금액만도 수천만원에 이르고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 15%까지 물리겠다는 단서조항도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입장에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표사의 경우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오히려 구성원사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 이런 반환요구와 맞닥뜨려야 하는 중소기업체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기성목표를 채우지 못한 사유는 보상이나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것이 대부분인데도, 원금은 물론 수천만원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에 따라 발주자가 일방통행식으로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한 현장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급금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색을 내놓고, 연말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자까지 챙겨가는 일종의 '갑질'이 아니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방통행식 과도한 선급금은 해당 시공사나 현장, 특히 중소기업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봉승권기자 skbong@ 3면에 계속

1면서 계속=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甲질하는 발주처

일방통행식 선급금보다 월별·분기별 기성 지급 필요

추후 이자까지 물어 반환해야 할 선급금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증에 따른 출자 및 수수료만 불어나고 협력사 등에 대한 지급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선급금의 일부를 보증기관과 공동관리로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업계는 이와 더불어 과도한 수준의 선급금은 현장 및 협력사 관리에도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선급금에 따라 대금을 미리 수령한 협력사가 파산하거나 고의부도라도 내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공사 수익성 부족과 맞물려 과도한 선급금이 협력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원가 부담금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급금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현장 인근의 소규모 단위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압

초가 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상호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선급금보다는 기간별 예측 가능한 수준의 기성지급과 그 지속성이 현장 및 협력사 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선급금제도는 제대로만 활용하면 시공사 및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연말에 이자까지 붙여 받아가는 형태의 선급금 지급은 발주자의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올해부터라도 매월 혹은 격월이라도 꼬박꼬박 예측 가능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매달 기성검사 등 행정력 부족이 우려된다면 이미 일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정식, 약식 기성지급 방식을 활용, 분기별이라도 적정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반환문제는 용지보상이나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이런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건설공제조합 <1급 승진> △정 보화지원실장 이화영 △신용심사실장 김인환 △수원지점장 이상돈 <2급 승진> △기획조정실 경영전략팀장 윤인호 △기획조정실 팀장 장명환 △채권관리실 보상팀장 구행근 △신용심사실 신용정보팀장 서용오 △감사실 감사역 정세영 △전주지점 부지점장 최철 <전보> △경영지원실장 김진현 △보증사업실장 하태원 △공사사업실장 서인렬 △채권관리실장 조재환 △감사실장 오법렬 △중앙지점장 조석현 △종로지점장 정용원 △여의도지점장 이일광 △서초지점장 이시영 △삼성지점장 김용석 △인천지점장 최창순 △안양지점장 김성희 △의정부지점장 채종훈 △성남지점장 김기호 △안산지점장 윤찬영 △일산지점장 여영섭 △춘천지점장 조태봉 △강릉지점장 정진극 △원주지점장 이학수 △삼척지점장 조성창 △청주지점장 이장희 △충주지점장 장선희 △대전지점장 김옥우 △예산지

업실 보증기획팀장 양희동 △보증사업실 보증영업팀장 나용철 △보증사업실 팀장 김석현 △공제사업실 공제기획팀장 정재석 △공제사업실 공제영업팀장 강동호 △공제사업실 공제심사팀장 윤성현 △공제사업실 공제보상팀장 김수현 △채권관리실 채권관리팀장 강민규 △채권관리실 법무팀장 김창균 △신용심사실 신용평가팀장 신연홍 △신용심사실 보증심사팀장 김광현 △연수원 팀장 김중복 △감사실 감사역 박창성 △종로지점 부지점장 이향숙 △동대문지점 부지점장 조영현 △서초지점 부지점장 이이선 △삼성지점 부지점장 김태호 △춘천지점 부지점장 이종일 △청주지점 부지점장 박종석 △대전지점 부지점장 김운환 △광주지점 부지점장 윤우중 △대구지점 부지점장 신길순 △부산지점 부지점장 송명기 △진주지점 부지점장 이은석 △강남보상센터 부센터장 장병진 △강북보상센터 부센터장 이용호 △중부보상센터 부센터장

아하! 그렇구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이행지체의 책임

Q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행지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특정 구성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정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가?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A 甲과 乙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丙으로부터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도급받았는데, 토목과 건축은 甲이 맡고 조경공사는 乙이 맡았다. 乙이 분담한 조경부문의 공사는 그 성질상 甲이 수급한 토목부문 공사를 마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 것인데 甲이 자금사정으로 토목부문 공사를 지연한 탓에 乙이 맡은 조경부문 공사의 착공이 늦어졌다. 乙은 착공 후 통상의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각자 특정한 공사를 분담하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도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분담부분에 한정하여 진다.

판례도 乙에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오로지 甲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乙에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이행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자기 분담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본 것이다.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